

2024년 『맞춤형예비창업가발굴육성사업』

기술이전 예비창업가 지원 사업 모집 공고

우수 기술 이전을 기반 및 유망 기술력 기반 아이템의 창업 촉진을 위하여 기술이전기반 창업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기술이전 창업에 관심 있는 예비창업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4년 3월 15일
(재)광주테크노파크원장

1. 모집 개요

사업목적

- 공공의 미활용 우수 기술을 창업자에게 이전하여 원천기술, 창업 아이템에 대한 기술창업 성공 유도
- 기술이전을 기반으로 사업화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하여 기술창업 활성화 유도

지원대상

○ (공통사항)

- 공고일 이전 광주광역시 거주자로, 同 사업 협약 후 지원기간 내 광주 소재지 창업(기술이전 계약 체결 기반)이 가능한 자
- 기술이전 수행완료 또는 기술이전 수행 예정인 예비창업자
 - ※ 기술이전 수행 예정 및 보유 기술이전 無 예비창업자
 - 덧붙임. 5 우수기술 및 유망기술 소개자료 선택
 - 상기 기술 외 기타 기술이전 희망자는 KIPRIS 활용(대학·기관 보유기술에 한함)

지원규모 및 기간

- (지원규모) 10개사 내외(기업당 최대 30,000천원)
 - ※ 지원프로그램별 소요예산 작성방법은 “신청서 【작성방법】 참조”
- (지원기간) 협약 체결일로부터 ~ 10. 30(수) / 약 6개월 내외

2. 지원 분야

- 지원분야 : 기계·소재, 전기·전자, 정보통신 등 전 기술분야
 - 디지털 생체의료, 지능형가전, 광융합, 스마트금형, 모빌리티, 스마트홈, 반도체 첨단 패키징, 산업활용·혁신 AI 등 광주지역 주력산업 분야
 - 『중소기업기술로드맵』에서 제시한 39대 전략분야를 우대하며 기타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등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“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(2023~2025)” 참조

3. 지원내용 및 방법

□ 지원내용 ①

同사업지원을 통한 신청아이템의 기술사업화, R&D기획 등을 위한 전문기관(업) 외주용역(가공)비 지원

- ※ 수혜기업 내부 임직원 인건비, 자산성 물품, 제품 양산비 지원 불가
- 세부 지원내용

| 구분 | 지원 분야 | 지원 내용 |
|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기술 사업화 지원 | 시제품 제작 | - 개발된 기술에 대한 시제품 제작(설계, 시험)을 지원 |
| | 제품고급화 | - 개발 제품의 고도화(기능 및 공정개선 등) 지원 |
| | 특허 출원/등록 지원 | - 지식재산권 (국내외 특허, 실용신안 등) 출원비 |
| | 시험·인증 | - 제품인증, 성능평가(시험분석, 신뢰성/성능인증) 등 |
| | 마케팅 지원 | - 신규(사)제품 및 기업 홍보를 위한 카탈로그 및 홍보영상 제작 |
| | 디자인 지원 | - 디자인 개발(개선) 및 브랜드 개발(개선) |
| R&D 기획지원 | 기술료 지원 | - 이전 기술에 대한 기술료 지원 |
| | 조사분석비 | - 시장조사·분석, 특허조사·분석, 수요조사·분석 등 |
| | 전문가 활용비 | - 중앙 및 지자체 과제기획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비 등 |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“덧붙임 2. 사업화자금지원 사용지침” 참조

- 지원방법 : 지원 프로그램 수행완료 후 제반 정규증빙 제출을 통해 해당 지원 프로그램 공급기관(업) 대상 지원금 지급을 원칙으로 함
 - ※ 단, 공급 서비스 및 공급기관의 특성상 사업비 선납이 필요한 경우 수혜기업이 외주용역(가공) 기업(관)에게 사전에 납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해당 내용을 사전 고지 및 관련사항 검토 후 수혜기업에게 직접 지원비 지급 가능
 - ※ 기술료 지원 소요비용의 경우 지원 프로그램 완료 전 선지원 가능
 - 기타 선지원이 필요한 경우 주관 협의결과에 따름
 - 지원대상 선정 후 중도포기 또는 최종 점검결과 사업수행 '실패' 판정 시 기집행된 지원금에 대해 (예비)재창업자 대상 환수조치

□ 지원내용 ②

창업 성장 및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집체교육 및 기본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

- ※ 추진 일정은 선정 이후 협약 체결 및 사업설명회를 통하여 별도 안내 예정
- 세부 지원내용

| 구 분 | 지 원 분 야 | 지 원 내 용 |
|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사업선정 後 | 선배창업 기업특강 | - 지역 내 선배 창업기업 사례 공유 및 창업트렌드 이해 |
| | BM고도화 | - 팀 빌딩 및 아이디어 발상 이론 학습 |
| | 그룹형멘토링 | - 아이템 및 비즈니스 모델 점검 및 인사이트 도출 등 |
| 사업종료 後 | R&D 사업계획서 작성 | - 과제수행과 사례기반 연구계획서 항목별 작성 전략 등 |
| | R&D 과제관리 | - 사업비 산정 및 집행·관리, 연구개발과제 전반 요령 등 |

- ※ 사업종료 後 사업수행결과에 따른 우수 창업자에 한하여 R&D컨설팅 진행

4. 사업 추진절차

| 구 분 | 세 부 내 용 |
|----------------|--|
| 사업 공고 및 홍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광주테크노파크 및 I-PLEX광주 홈페이지 참조 - 기술이전 DB 공유 등 상세내용 공고문 참조 |
| ↓ | |
| 신청 및 접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예비창업자 → 우편 및 방문(우편제출 권고) |
| ↓ | |
| 여건검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예비진단 및 서류 검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원대상 적격여부 사전검토 및 중복성 진단 등 · 기술이전 수요 타당성 검토(광주TP↔담당기관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술탐색, 협상중개추진 등 |
| ↓ | |
| 선정평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평가위원회 개최(대면평가 및 평가기준 적용) |
| ↓ | |
| 협약체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선정기업 통보 및 협약체결(광주TP↔예비창업자↔공급기업) · 사업 설명회 및 지원사업 수행 절차 안내 · 수요기술 매칭 데이 진행 등 ※ 추후 별도 안내 |
| ↓ | |
| 사업수행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사업계획서에 의거하여 지원분야별 사업수행(협약 기한 내) ② 집체교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 수행(4~5월) ③ 기술이전계약 체결 및 사업자등록증 발행(협약 기한 내) ④ R&D 및 비R&D 사업추진 컨설팅 추가 지원(7~10월) |
| ↓ | |
| 중간점검(필요시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사업수행 기간 중 현장방문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통한 중간점검 |
| ↓ | |
| 결과 보고서 제출 및 검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수행결과 최종보고 및 우수 성과 발표 (예비창업자 → TP) |
| ↓ | |
| 사업비 정산 및 후속조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사업비 정산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|

※ 상기사항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

5. 신청방법

- 신청양식 : (재)광주테크노파크(www.gjtp.or.kr) 및 I-PLEX광주 홈페이지(www.iplexgj.com) 공지사항 내 다운로드
- 제출서류
 -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1부
 - 첨부서류
 1. 주민등록등본(주민번호 전부 표기) 1부
 2.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각 1부 ※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
 3. 교육, 지식재산권 사본, 수상 내역 등 증빙자료 각 1부(해당자에 한함)
 4. 신청 프로그램별 견적서 각 1부.
 5. 기술이전 계약서 1부('기술이전 수행 완료자'에 한함)
 6. 기술이전 의향서 1부 ※ 별첨1 작성
(‘기술이전 수행 예정 및 보유 기술이전 無 예비창업자’에 한함)
 7. 전문가 프로필,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각 1부
(‘전문가활용 지원프로그램 해당자’에 한함) ※ 별첨 2 작성
 8.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및 중복지원 금지사항 약약서
- 접수방법 : 방문 또는 우편접수
 - (접수처) I-PLEX광주 2층 운영본부 202호(동구 동계천로 150)
 - (접수기한) 공고일로부터 ~ 4. 5(금) 17:00
※ 우편 접수의 경우 신청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

문의처

| 기관명 | 담당자 | 문의처 | 이메일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(재)광주테크노파크 (I-PLEX창업센터) | 박장곤 선임 | 062-239-9613 | jjanggon@gjtp.or.kr |
| | 박유정 전임 | 062-239-9615 | uj4047@gjtp.or.kr |

6. 선정절차 및 기준

□ 선정절차 : 예비진단(적정/중복성 검토) → 선정(대면)평가

□ 세부 추진일정



※ 상기사항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

□ 세부 추진일정(안)

○ 1차(서류검토) :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를 통한 적정성 여부 검토

○ 2차(선정평가) : 전문가 위촉을 통한 선정평가 위원회 평가

- 제출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평가표에 의거하여 심사위원 산술평균 (최고, 최저 제외) 70점 이상 기업

※ 심사는 우리 법인이 정한 기준에 따르며 세부 평가결과는 공개(不)

※ 제출된 서류 일체에 대해 평가하며, 발표평가 대상자에 한해서만 결과 및 향후' 일정 개별공지

- 단, 동일 접수일 경우 '기술개발 및 사업화계획' 높은 과제 우선 선정

□ 평가배점

| 항 목 | 평 가지 표 | 배 점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|
| 이전기술 파급성(40점) | - 창업 아이템 및 이전기술의 성능 및 기능 | 15 |
| | - 이전기술의 기술 경쟁력 및 준비성 | 15 |
| | - 이전기술의 성장성 및 시장성 | 10 |
| 기술개발 및 사업화 계획(45점) | - 기술개발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| 15 |
| | - 비즈니스 모델(Business Model) 전략 구체성 | 15 |
| | - 개발결과 활용 및 수익성 창출 방안 | 15 |
| 사업비 적절성 및 기대효과(10점) | - 예산운용 계획의 타당성 | 5 |
| | - 성과목표 명확성 및 지역사회 파급효과 | 5 |
| 우대가점(5점) | - Co2 저감기술(제품), 재생에너지 기술(제품) 등 환경오염 방지 및 개선 관련 과제 | 2 |
| | - (예비)창업자 자부담율 20% 이상 적용 시 | 3 |
| 합계 | | 100 |

7. 유의사항

1.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(평가결과는 개별통보)
2. 지원제외 ① : 예비창업자 유사 지원사업 중복 불가(ex. 예비창업패키지 등)
지원제외 ② : 대표자 이중 창업 및 사업 전환 불가
3. 기술이전 수행완료자의 경우 대학·기관 보유 기술 이전 완료자에 한함
4. 과제별 최대 지원액을 감안하여 단일 지원프로그램 또는 복수 지원프로그램 신청 가능
5. 지원 프로그램별 견적서 등 객관적 산출자료를 근거로한 공급가액 기준 소요비용 및 기업 자부담을 산출 : 부가가치세 전액 기업 부담
6.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원신청자 연락처(사무실, 휴대전화, 이메일 등)로 요청할 수 있으며,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
7.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,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·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,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8. 선정된 과제의 지원금액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신청지원금 축소에 따른 창업자 부담금 자동 발생 또는 증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우대가점 사항에는 적용하지 아니함
※ 사업 신청시 소요비용 과대 산정금지
9. 사업 선정 후 창업자 부담금 축소변경은 불가하며, 사업비 집행 시 창업자 부담금을 우선 활용하고, 부담금 집행완료 후 또는 병행하여 지원금 지원
10. 최종 사업결과 확인 시 기업 자부담금 전액 부담 미이행 시 해당 비율 만큼 지원금 지급비율 감액 지급
11. 협약일로부터 1년 이내 특별한 사유없이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참여 제한과 지원사업비에 상응하는 조치 가능
12. 지원사업 수행 후 사업지원을 통한 성과분석·관리·활용 등을 위해 매출 및 신규고용 등 지원 성과에 대해서 협약기간을 포함하여 협약 종료일로부터 향후 5년간 자료 성실히 제공
13.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이 시행하는 기업지원사업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

- 자료제공 의무 미이행 기업
- 기업지원사업 중도포기 기업 (※ 불가항력에 의한 중도포기 관련 소명시 제외)
- 기업지원사업 수행결과 '실패'(또는 이에 준하는 '미흡'시) 판정 기업
- 그 밖에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

- 기업지원사업 신규 참여제한 기간은 확정일 기준 1년 함
- 둘 이상의 기업지원사업을 수행하던 중 하나의 과제로 인하여 참여제한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다른 기업지원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며 총 참여제한 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 함

□ 지원제외 대상(공고일 기준)

-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-32호(2018. 1. 22.) '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' 적용 : <별표 3> 신청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 적용

- 붙임
1.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
 2. 사업화자금지원 사용지침
 3.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
 4. 지원제외 대상 업종
 5. 우수기술 및 유망기술 소개자료